

수원지방법원 2021. 5. 25 선고 2021가단3966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5. 25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[별지 1]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7. 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[별지 1]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. 7. 13. 접수 제29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2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최환영

[별지 1]

별 지 목 록

-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1. 충청북도 충주시 |  | 답 1269㎡ |
| 2. 충청북도 충주시 | | 답 1643㎡ |
| 3. 충청북도 충주시 | | 답 1511㎡ |



[별지 2]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소외 C에 대한 채권 및 연체내역

가. 소외 C은 원고와의 대출거래에 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1. 표시와 같이 대출을 받았습니다.

<아래1.>

대출일자	대출금액	대출기간	약정이자율	연체이자율
2018. 7. 13.	금 30,000,000원	60개월	연17%	연20%

나. 2021. 2. 26. 현재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미회수 잔액은 아래2. 표시와 같습니다.

<아래2.>

미회수잔액				
원금	이자	지연배상금	비용	합계
금 20,912,290원	금 1,936,880원	금 635,520원	금 371,710원	금 23,856,400원

다. 위 C은 원고와의 이권 약정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(이권 대출약관 제6조)하였는바, 위 C은 2020. 8. 1.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중이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.

2. 위 C과 피고의 사해행위

가. 위 C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권 부동산들에 대하여 자신의 처(妻)인 피고에게 2020. 7. 8.자 증여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. 7. 13 접수 제292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비렸습니다.

나. 위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자신의 처(妻)인 피고에게 이전登記한 것이며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.
(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의 C은 위 이전登記를 한 이후부터 바로 대출금 상환을연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)

다. 따라서 위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~~사행~~행위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登記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원고는 위 소의 C과 피고간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위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登記의 말소登記절차를 구하고자 이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